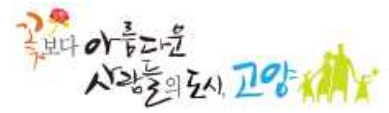


【제 1312 호】



2016년 10월 7일 (금)

고양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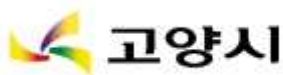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6-1469호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16-1478호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8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6-24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10호선, 녹지5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5
고양시 고시 제2016-24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02호, 대로2-6호선, 대로3-23호선]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6
고양시 고시 제2016-242호	도로명주소 고시	4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취득세 등 도세 등의 체납액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특별한 노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취득세 등 도세와 국가 및 도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의 경우 그 세원이 시에 귀속되지 않음에도 시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세와 국가 및 도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1호)

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사유로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특별한 노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다. “도로, 하천 등 무단점용자 제보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통일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최근 10년간 지급신청이 없었던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취득세 징수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에서 삭제함.(안 제4조)
- 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6년 10월 27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징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징수과 체납행정팀 (031-8075-226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

나. 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다.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6.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1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납세의무 성립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 회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2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 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구는 구청장.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지급대상 선정
2. 제4조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
3. 제5조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는 위원장을 징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구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해제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또는 구 징수업무 부서
2. 세외수입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징수업무 부서

제12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대상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징 수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징 수 과 장 고 완 수
	팀 장 성 명	체납행정팀장 강 복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복 선 (031-8075-2261)

채납자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p>1. 신고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전화번호:</p> <p>○ 주 소:</p>							
<p>2. 피신고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p> <p>○ 주 소:</p> <p>○ 사업장소재지:</p>							
<p>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p>년 월 일</p> <p>신 고 자: (인)</p> <p>귀하</p>							
<p>처리자 : 직급 성명 (인)</p>				<p>결 재</p>	<p>담당자</p>	<p>담당</p>	<p>과장</p>

[별지 제4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채납자			징수내역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채납자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액	징수 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액			

-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u>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설></u></p>	<p><u>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u>고양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방세 : 시세,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 나. 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현행	개정안
<p><u>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을 포함한다) 4.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 	<p><u>다.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u></p> <p><u>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u></p> <p>6. “<u>지난연도 체납액</u>” 이란 <u>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61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u></p> <p><u>제3조(지급대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납세의무 성립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p>는 사람</p> <p>② 제1항제3호에서 “<u>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u>” 이란 <u>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u>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u>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u> 아니한다.</p> <p>1. <u>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u></p> <p>2. <u>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u></p> <p>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u>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u> 아니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u>포상금을 지급하지</u>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u> 아니한다.</p> <p>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영 제105조의2를 따른다.</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포상금을 지급하지</u> 아니한다.</p> <p>1.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p> <p>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p> <p>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u>포상금을 지급하지</u>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u>포상금을 지급할 수</u> 있다.</p> <p>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p> <p>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2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현행	개정안
<p><u>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u>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u></p> <p><u>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u></p> <p><u>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u></p> <p>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u>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은 민생경제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u></p> <p><u>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u> <u>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u> <u>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u> <p><u>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u></p>	<p><u>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u></p> <p>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p> <p><u>① 시장(구는 구청장.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3조의 지급대상 선정</u> <u>2. 제4조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u> <u>3. 제5조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u> <p><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시는 위원장을 징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u></p> <p><u>④ 구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u>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u></p>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백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천5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7.14>
4.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영 제105조의2를 따른다.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개정 2014.7.14>

제5조(대장비치) ① 해당과장은 과년도 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숨은 세원발굴 과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의 경우에는 부과·징수 또는 환급 업무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시·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청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고양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청에 고양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은 민생경제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6.2.1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구청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민관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첨부 의견서 작성제출)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시민안전과(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정책팀(031-8075-2983)
- E-mail : hugforyou@korea.kr(담당자 : 전경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 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
2. 임시회의 :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김 수 오
	팀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정책팀장 조 병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경 배 (031-8075-2983)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10호선, 녹지5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7.
고 양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47.5	주간선 도로	5,578	광로3-7 주교동 270-33	대로3-11 중산동184-9	일반 도로	-	경고제11호 77-01-27	
변경	대로	1	10	35~47.5	주간선 도로	5,578	광로3-7 주교동 270-33	대로3-11 중산동184-9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0	대로1-10	· 면적 증가 : A = 476 m ²	·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일부를 도로로 변경

2) 공간시설

①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6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759	3,219	감)476	2,743	경고제5132호 02-01-05	면적 감소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완충녹지)	녹지 (완충녹지)	· 면적 감소 : A = 3,219 m ² → 2,743 m ² / 감476 m ²	·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완충녹지일부를 도로로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02호, 대로2-6호선, 대로3-23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02호, 대로2-6호선, 대로3-23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절차 및 같은 법 제92조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7.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6	30~33.25	주간선 도로	6,492	대로2-5 행신동 845	대로2-11 성사동 산18-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504호 '91.12.31.	
변경	대로	2	6	30~33.25	주간선 도로	6,492	대로2-5 행신동 845	대로2-11 성사동 산18-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504호 '91.12.31.	보도폭원 정형화를 위한 시설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대로2-6호선	대로2-6호선	•면적 변경(증 13m)	•보도폭원의 정형화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2	주차장	노외주차장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31번지 일원	3,577	감) 13	3,564	고양시고시 제172호 '08.10.31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02	주차장	• 면적 변경 - 3,577㎡ → 3,564㎡ (감 13㎡)	• 보도폭원의 정형화에 따른 면적 변경

2)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덕양구 화정동 118-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 202호 주차장, 도로 : 대로2-6호선, 대로3-23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노외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주차장	202	노외주차장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31번지 일원	3,564	고양시고시 제172호 '08.10.31	

○ 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3	23	25~28	1,004		대로2-6 화정동 118-17	대로2-8 화정동 809-17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504호 '91.12.31	
금회 시행	대로	3	23	28	66	195	대로2-6 화정동 118-17	대로3-23 화정동 115-14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결정	대로	2	6	30~33.25	6,492		대로2-5 행신동 845	대로2-11 성사동 산18-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504호 '91.12.31.	
금회 시행	대로	2	6	30	75	306	대로2-5 행신동 845	대로2-11 성사동 산18-1	일반 도로		일부구간 확폭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 547동 902호(화정동, 은빛마을)
- 성명 : 김 재 중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노외주차장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소	
1	고양시	118-18	목	188	139	최명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71 장미아파트 22동 1405호			
2	덕양구	118-31	임	3,770	3,172	김재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70번지 547-90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 (미야역지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3	화정동	산115-2	도	1,115	50	고양시				
4		산115-15	도	3,905	203	고양시				
합 계		4필지		8,978	3,564					

▷ 도로

1) 대로 3-23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소	
1	고양시	118-17	도	4,803	61	고양시				
2		118-18	목	188	18	최명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71 장미아파트 22동 1405호			
3	덕양구	118-31	임	3,770	8	김재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70번지 547-90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 (미야역지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4	화정동	산115-2	도	1,115	108	고양시				
합 계		4필지		9,876	195					

2) 대로 2-6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내용	주소	성명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17	도	4,803	35	고양시					
2		118-18	목	188	31	최명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71 장미아파트 22동 1405호				
3		118-31	임	3,770	5	김재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870번지 547-90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 (미야역지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4		산115-15	도	3,905	235	고양시					
합계		4필지		12,666	306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고양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13-5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0. 7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1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13-5 (내유동)	20161007	20090710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 을 바라는 뜻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91-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19-2 (원흥동)	20161007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 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 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96 (삼송동)	20161007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 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 용하여 도로명 부여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5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28-9 (신원동)	20161007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49-1 (도내동)	20161007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3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52-3 (원흥동)	20161007	20131022	삼송동과 원흥동의 한자 씩을 도로명에 활용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1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정로 29-20 (도내동)	20161007	20131108	문화재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92, 692-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18-20 (성석동)	20161007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실문동 761-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145-21 (실문동)	20161007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 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실문동 761-3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145-23 (실문동)	20161007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 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42-6, 1042-3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8번안길 126-6 (성석동)	20161007	20100126	성현로138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42-39, 1042-42, 1042-4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8번안길 126-8 (성석동)	20161007	20100126	성현로138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2길 11-5 (중산동)	20161007	20110715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 용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실문동 576-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223 (실문동)	20161007	20110720	은곡-마곡마을의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78-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종로 71 (일산동)	20161007	20090911	일산-중산간 도로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산392-8, 39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6-8 (가좌동)	20161007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701-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118번길 105-101 (덕이동)	20161007	20100126	장자길 시점에서 1180m에 위치한 도로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9-1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31-12 (대화동)	20161007	20100126	강성로 시점에서 2140m에 위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03-8, 40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3-3 (덕이동)	20161007	20110715	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404-18, 406-17, 407-2, 407-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3-11 (덕이동)	20161007	20110715	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07-1, 407-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3-13 (덕이동)	20161007	20110715	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03, 403-1, 404-19, 407-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3-5 (덕이동)	20161007	20110715	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법정동		비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별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223	2016. 10. 07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실문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6-8	2016. 10. 07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실문동		